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10030000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0.02.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food3656@
naver.com



정 보 공 개 서

[(주)경청에프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경청에프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2, 4층(부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051-758-949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051-464-985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대표이사 전재범 010-2978-1830 (공개)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경청 에프씨	문삼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2, 4층 (부전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12.02	2009.12.07	전재범	051-758-9494	051-464-9854
	법인등록번호	180111-0695908	사업자등록번호	617-81-8114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대표이사)	전재범	문삼이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12, 4층(부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전재범	051-758-9494	051-464-985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이사)	채석재 (주)웰푸드 대표이사	뉴욕핫도그 & 버그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7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채석재	1666-0448	0505-330-072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이사)	이민수	없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12, 4층(부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민수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 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해당없음				

인도합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문삼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문삼이	가족단위 외식의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한 친근한 명칭을 사용함.
상 호	문삼이 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05922호 등록인: (주)경청에프씨 등록일: 2014년12월01일
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영업표지	상표와 동일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8,341	44,330	-25,989	76,964	-3,352	-1,352
2022년	22,512	40,419	-17,907	81,632	-1,917	8,082
2023년	24,095	48,079	-23,984	74,073	-6,078	-6,077

당사는 [2009]년 [12]월에 법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당사는 추정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전재범	대표이사	2012.03.30 ~	(주)경 청에프씨 대표이사	가맹점 업무총괄
	채석재	이사	2012.03.30~	(주)경 청에프씨 이사	등재이사/비상근
			2020.07.14.~	현, (주)웰푸드 대표이사	
	이민수	이사	2018.03.30 ~	(주)경 청에프씨 이사	등재이사/비상근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2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경 청에프씨	문삼이	2009.12.07.~	문어 찌꾸미
가맹본부 이사	(주)웰푸드 채석재	뉴욕 핫도그 앤 버그	2020.07.14.~	등록번호 : 20200869 패스트 푸드 가맹사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문삼이 (상표권)	문삼이 (상표권)	2014.01.09.출원 2014.12.01.등록	출원 제4120140001200 등록 제41-0305922호	(주)경청 에프씨	2024.12.01 (제한없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문삼이] 가맹사업 현황

1. [문삼이]을 시작한 날 : 2009년 12월 07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사항없음)

2. [문삼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 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경청 에프씨	문삼이	전재범	2009.12.07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12, 4층(부전동)

3. [문삼이] 업종

영업표지	업종	
문삼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삼겹살, 문어, 주꾸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문삼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3	0	3	3	0	2	2	0
서울	-	-	-	-	-	-	-	-	-
부산	3	3	0	3	3	0	2	2	0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문삼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	0	0	0	0	3
2022	3	0	0	0	0	3
2023	3	1	0	2	0	2

[문삼이]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문삼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문삼이]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본부	(주)경 청에프씨 문삼이 전재법	문삼이	20100300002	한식	3/0	3/0	2/0
가맹본부 이사	(주)웰푸드 채석재	뉴욕핫도그 & 버그	202000869	패스트 푸드	14/0	14/0	14/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문삼이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 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곳미만

서울	-	해당없음						
부산	2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전국 가맹점이 5개 미만으로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에 적합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예상수익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시한 매출자료는 직전년도 [문삼이]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자료 자료 금액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익률은 가맹희망자가 창업할 희망 평수에 대하여 통상적 인건비, 월세 등 운영 비용을 차감하여 스스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문삼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문삼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개	2,482일/2개점=1,24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문삼이]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문삼이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광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해당없음				
광고	소계	해당없음				
	TV	해당없음				
	라디오	해당없음				
	인터넷	해당없음				
판촉	소계	해당없음				
	월 행사	해당없음				
	명절 행사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산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부산우체국	금융팀	부산시 중구 중앙로 77 부산우체국장(문삼이) (600015-01-018516)	051-600-3160

[가맹금을 부산우체국에 가맹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예치 후, 영수증 사본을 당사로 제출하여 주시고,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기관을 선정하여 입금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보상보험 체결은 하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문삼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신규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비고
----	----	-------	------	-------	----

				없는 사유	
총계	[11,000]				
최초 가맹비	4,400	계약 체결 후 [7일] 우체국예치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정한 기준의위약금을공제 (계약금을 별도로지급 하는경우,사후가입비로 전환)
신규 교육비	6,600	교육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3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보증금도 수령하지 않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해당없음			
(현금)보증금	해당없음			
담보목적물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11,000]
최초 가맹비	4,400
신규 교육비	6,6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P]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85,800~ 94,600				[실 99㎡기준]
필수설비 (정착물)	해당없음					해당업체에 점주가직접 지급 원칙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본부미지정/점 주선택	52,800 ~56,100 구조에따라 점주와 현장 협의 결정	1,760 ~ 1,870	계약금:60% 중도금:30% 잔 금:10%	공사전 계약 취소	99㎡ 기준 3.3㎡ 늘어날 때 마다 1,760천원 추가부담(보통형)(고급형 1,870천원)
간판/실사류	본부미지정/점 주선택	3,300~ 5,500		계약시:50% 설치시:50%	진행전 취소	사양점주선택
주방기물류	본부미지정/점	11,000~		계약시:50%		점주지급

	주선택	13,200		설치시:50%		
점포그릇류	본부미지정/점주선택	9,900~11,000		구입시 100%		점주지급
본부공급품목	본부공급	2,200		구입시 100%		점주지급
일반식자재	본부미지정/점주선택	3,300		구입시 100%		점주지급
기타소요비용	본부미지정/점주선택	3,300		구입시 100%		사은품,개업이벤트,유니폼,소모품 기타

[당사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기물, 그릇, 식자재 및 기타 비용 등 모든 공사 및 구입은 가맹점주님이 직접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행, 중고 기물 구입, 렌탈 등으로 최대한 창업 비용을 절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기 금액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가맹점주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며, 가맹희망자 지정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개점 진행 소요비용으로 영업장 실제 평수 당 220천원(부가세포함)/3.3㎡]을 인테리어 공사 진행 전에 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사의 컨셉을 공사한 경험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의 공정 진행과 차질없이 개점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사 제시외 별도 지급 예상 명세]

개별 점포의 특징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 실행 전에 비용을 협의한 후 진행합니다.

내용		
점포개발/부동산중개료	에어컨/난방용품/TV	홀 급기및배기관 공사비용
건물용도변경관련비용	기본간판규격및수량초과시	화재&음식물배상보험 등
기존점포시설물철거비용	화장실관련비용	기타 사전 비협의 내용
외부익스테리어/테라스	앰프/스피커/컴퓨터/전화기	숯불관련 닥터 및 테이블
전기승압관련비용	포스/CCTV/보안경비/호출벨	
1층이상외부닥터설치비용	인터넷/전화/유선방송설치	
점포별환경개선분담금	주방정수기/홀정수기	
정화조신설 및 증설비용	화장실비데설치	
외부수도배관공사비용	도시가스/가스설치공사비용	
판넬냉장/냉동고제작비용	지하에영업장이있는1층과 2층이상 우레탄 방수공사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점포를 선정 계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에서 가맹점포를 알선 및 중재할 경우 부동산 중개료 외에 가맹희망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점포 계약 전에 당사로 가맹 점포로서 가능한 지를 당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협의되지 않고 가맹희망자의 임의 판단으로 점포계약을 진행한 경우 가맹점 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계약금 외 기타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당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당사는 점포개발에 대한 의견을 일정 부분에서 제한적 의견을 드릴 수 있으나, 점포의 최종 선택과 향후 영업 및 매출 수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맹 희망자의 판단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가맹점포 선정시 당사의 제한적 의견이나 조언을 이유로 영업부진, 수익성 저하에 대한 책임을 당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 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문삼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주방집기	냉장고	가맹점주 직접 계약 및 지급	가맹점사업자직접구입
	가스레인지		
	그릇		
외부	간판		
	입간판		
내장재	실내공사		
기타	포스		

가맹희망자가 문삼이를 운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공사 및 기물구입 등을 진행할 시 비효율적인 업무동선, 부적절한 기물배치로 여유공간 미활용, 컨셉과 디자인의 부조화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거래업체를 소개할 수도 있으며, 거래 및 계약 여부는 가맹점 희망자의 판단으로 합니다.

8)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시 당사에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은 부산우체국에 예치하고 있으며, 할부 또는 분할납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필요시				필요시협의
관측분담금		필요시				개별점포 필요시
교육훈련비		필요시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점주선택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점주선택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3개월마다 지급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당사는 가맹점포의 점포환경개선(리모델링 등..)에 대한 강제를 하지 않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는 방식의 가맹점관리는 하지 않으며, 해당 점포에 대한 재고관리, 회계처리, 직원 및 전반적인 점포관리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본사의 판단으로 필요시 수시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 통화, SNS 통보 등으로 점포 관리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메일:)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해당없음		점주직접관리
회계처리	해당없음		점주직접관리
직원/점포관리	해당없음		점주직접관리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필요시협의	교육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해당없음				
재계약가맹비	해당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양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없으며, 양수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비 : 양도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 기간까지는 당사에 지급하지 않음.

신규교육비 : 가맹점주 신규교육 [6,6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함.

물품보증금 : 본부 물품 주문시 선결제 원칙이므로 해당 사항없음

운영권양도 : 자세한 절차는 [2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3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소비자가 [문삼이] 임을 연상할 수 있는 상호, 서비스표, 식별기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본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발설하여서는 안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문삼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문삼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문삼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2) 당사는 [문삼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쭈꾸미	왼쪽에 기재된 메뉴는 반드시 판매하여야 하며 본부와 협의한 점포별 메뉴판매가 가능합니다.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짜글이			
기타 본부 개발할 메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위치, 고객층, 점주의 조리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본부와 별도로 협의한 메뉴를 판매할 수 있으나, 본부와 의견이 불일치 시에는 본부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당사에서 개발한 신메뉴 추가 판매 시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 상대방 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벌금, 영업정지 등의 강력 처벌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불 주꾸미	30,000(300g)	가격 변경시 문자발송	2023.12월 기준
쭈꾸미짜글이 한판	30,000(200g)		
삼겹쭈꾸미 한판	32,000		
치즈쭈꾸미 한판	34,000		
시래기생삼겹살	10,000(150g)		
시래기 대패삼겹살	5,000(100g)		
시래기차돌박이	10,000(100g)		
시래기소갈비찜	35,000~45,000		
문어한접시	12,000~25,000		
김치생찌개	9,000		
맵싹 닭도리탕	23,000		
한우곱창 닭도리탕	27,000		
차돌 닭도리탕	27,000		
묵은지 닭도리탕	27,000		
부대 김치전골	30,000		
기타 본부개발메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삼겹살, 주꾸미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문삼이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인구 1만 명당(30평기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2)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2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동 단위(예:부전1동) 행정 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영업지역 설정시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시 가맹 점포의 위치와 규모, 임대료 등의 조건 등을 상호 합의하여 구체적인 영업 지역 지도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서에 첨부합니다.]

[배달영업 여부는 점주의 선택이며, 배달 영업지역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만, 인근 가맹점 과 배달 영업권 중복 분쟁 발생시 가맹 계약 시 협의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배달이 가능한 것으로 밀 분쟁을 조정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 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 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문삼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문삼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해당없음	
대리점		해당없음	
일반소매점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해당없음			
홈쇼핑	해당없음			
전화권유판매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당사는 온라인을 통한 매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문삼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문삼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7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을 [3회]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051-758-9494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받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 신규 교육비 [660만원]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도 가맹점주와 본부간의 별도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 양도 계약 체결 전에 본부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 또는 여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 등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운영양도 절차와동일합니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본부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운영양도 절차와동일합니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본부지급
업무위탁	해당없음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문삼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문삼이와 동일한 메뉴의 명칭과 용기 및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당사 051-758-949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문삼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점주의 자율로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 ~ 22:00 (10시간이상)	일요일, 공휴일외 영업	문의:당사 051-758-9494

최소한 영업시간과 일수를 권장하며 점주는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 피하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당사로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심야시간대(오전 01시~06시) 영업을 강요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자율 판단과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홀 1명 이상 주방 1명 이상	가맹점사업자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가맹점사업자는 주방의 메뉴조리와 동선, 전체 인원관리 등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만 성공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드시 가맹점사업자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주방 근무 후 홀 및 전체 업무를 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후에 가맹점의 메뉴조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규 조리 전수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맹점사업 자가 [문삼이] 메뉴를 완벽하게 조리하지 못하면 메뉴의 품질저하 및 직원 이직시 불만 고객증가와 매출 하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방 및 홀의 직원수는 굳이 정하지 않습디만, 최초 점포 개점시에는 직원의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직원을 여유있게 고용한 다음 직원들의 업무 숙달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적정 인원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정기적 가맹점 방문 또는 가맹점 관리표 등의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관리. 감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의 점포 관리비가 가맹점사업자의 고정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당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방문 또는 전화, SNS, 메일 등으로 관리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정행사				
	팸플렛 등 제작				
	기타 개별행사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이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6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개점 소요 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하는 점포의 특수성에 의하여 철거, 인테리어, 외부 공사의 규모 그리고 기상 조건 등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사일정은 가맹 계약 체결 후 철거가 완료되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야만 점포 개점 일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 -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 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점포환경개선(리모델링)은 가맹점사업자 자율적 판단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를 하지 않으며, 당사의 인력 또는 비용 등의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비용 부담 또는 인력지원 등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해당없음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시 개점행사비, 판매장려금, 판촉지원, 집기무상대여, 판매행사 물품 반품지원, 마일리지, 우편발송, 신제품 테스트 지원 등의 인력 및 행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가 주관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경영활동 자문을 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운영 등의 문의가 있을 시 통화, 메일, 카톡 등으로 해결합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통화, 메일, 카톡 상담	필요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문삼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자금 지원		해당없음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조기 안정화자금, 매출 부진 등의 경영 지원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자금지원		해당없음			
매출부진경영지원		해당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문삼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본사지정장소 개별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 또는 레시피 교육	신메뉴 출시등 필요시	신메뉴출시 및 점포별 필요시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문삼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출퇴근, 숙박없음) 가맹점사업자	6,6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필요시 통보	필요시 통보	신메뉴출시 및 점포별 필요시 필수교육

교육이수 시간은 오전 11:00~22:00 이내로 하며, 교육시 식사는 당사의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규 교육에 따른 별도의 식사비, 교통비 및 숙박비 등 기타 경비 지급은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을 받을 시에는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부대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 동반 교육시 추가 인원 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며, 신규 조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문삼이] 메뉴를 조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하는 교육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성명 : 연락처 : 관계:
 대리인 주소 :
 교육 위임 가맹점사업자의 성명 : (인)

교육을 이수한 대리인이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재차 대리인 교육을 당사로 요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교육비 [660만원]을 당사로 지급하여야 하며, 외식업 특성상 직원 이직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 신규 교육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이수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가맹점 신규 교육 개시 후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으로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개점지연 또는 가맹 계약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인건비 등의 손실 책임을 당사에 물을 수 없으며, 신규 교육 개시 후에는 교육비 [660만원]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14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메뉴 조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메뉴를 판매하실 수 없으며, 신메뉴 조리 교육 실시 후 [30일] 이후까지 미이수 시에는 고의적으로 당사의 영업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맹계약 완료시 갱신 또는 연장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없음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